

건 축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국 토 교 통 부

(건 축 정 책 관)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4.1.14,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변경·폐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절차 규정(안 제38조의8 신설)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가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건축협정의 인가·변경·해제 절차 및 관리 규정(안 제38조의9, 제38조의10 신설)

1) 건축협정을 인가받거나 또는 변경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협

정서를, 폐지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협정폐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건축협정을 인가·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건축협정 유효기간까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도록 함.

3)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8부터 제3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77조의5에 따른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위원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건축협정운영회의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의7에 따른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폐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법 제77조의7 및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건축협정 유효 기간까지 건축협정서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8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10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8, 제38조의9, 제38조의10, 별지 제27호의7서식, 별지 제27호의8서식, 별지 제27호의9서식,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illegible]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명) (주소)	(생년월일)

④ 운영목적 및 방법	(목적)
	(운영)
	(역할)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건축법」 제7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8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건축협정서

(2면 중 제1면)

인가번호		
건축협정 개요	명칭	목적
	위치 및 범위	
건축협정 체결자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 성명 (법인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협정내용		
○ 주택의 신축.개량.보수에 관한 사항 ○ 맞벽 건축에 관한 사항		
○ 「경관법」 제16조제4항 중 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건축협정운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목적, 방법, 기능, 기타)		

「건축법」 제6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협정서에 대한 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illegible]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 폐지신청서

(2면 중 제1면)

인가번호

건축협정 개요	명칭	
	위치 및 범위	
건축협정 체결자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 성명 (법인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폐지사유		

「건축법」 제 77조의 9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8조의 9 제 2항에 따라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건축협정 폐지 동의 사항

위치(지번)	면적(㎡)	성명	주 소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또는 인

[illegible]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27호의10서식]

건축협정 관리대장

[illegible]

건축협정체결자 변경사항							
위치(지번)	변경일자	당초	변경	위치	변경일자	당초	변경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77조의5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위원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건축협정운영회의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별지 제27호의 7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의7에 따른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폐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법 제77조의7 및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건축협정 유효 기간까지 건축협정서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8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건축협정관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63, 3764